

2016 이룸기획포럼

성 산 업

대 부 업

성형산업

의 공모

여성대출 여성우대

유통업소특화상품 대출브로커

페이스론 아가씨대출 뷰티론

미즈론 성형할부 성형대출

미니스 매주 여우머니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후3시30분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

주 최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2016 이룸기획포럼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 목 차

【발제】

- 03p...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 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토론】

- 24p... 미용성형 및 미용성형시장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36p... 성형대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의 허점을 돌파하기
: 성형대출의 반인권적 속성을 고려한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원민경 (법무법인 원)
- 42p... 금융과 신용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김주희 (이화여대 강사)

【부록】

- 46p...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강남거리캠페인 유인물>
- 49p... <판결문 : 강남의 죄>

【발제】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¹⁾

<목차>

1. 들어가며: 왜 성형대출인가?
2. 성형대출피해 사례로 본 성형대출 커넥션의 실태
3.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성형과 성형대출
4.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5. 구조적 책임을 묻는다 - 성형대출에 개입하기 위한 법률 정비
 - 가. 여성관련법률의 정비
 - 1) 성매매특별법 상 선불금 해석의 확대
 - 2) 유흥업소종사자제도의 반여성적 속성을 고려한 대책 필요
 - 나. 약탈적 대출인 여성대출을 둘러싼 법률 정비
 - 1) 약탈적 대출의 불법화
 - 2) 추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별을 고려한 정책 마련
 - 다. 성형대출이 가능한 구조, 누가 책임질 것인가?
6. 나가며: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끊어내기 위하여

1. 들어가며: 왜 성형대출인가?

1) 이룸 내부 세미나, 자료수집, 인터뷰, 온·오프라인캠페인 등을 통한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로서의 몸’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외모-몸 관리가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²⁾ 여성들은 취업시장에서 외모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익숙하다. 이는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 전반적인 현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가 구조화된 것뿐이다. ‘여자는 외모다.’라는 정언명령은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몸으로 환원, 평가받아 마땅한 ‘여자’로 고정시킨다. 성형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더불어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성형은 직접적인 자기투자 방법이다. 성산업에서 여성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첫인상에 초이스를 받아야 한다. 높은 매출을 바라는 성산업의 관리자들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을 품평하며 ‘사이즈’를 만들기 위한 성형 및 다이어트를 권한다. 나의 사이즈가 어떤지, 어디를 성형하면 좋을지, 성형외과 및 성형대출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을 소위 화류계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몸을 개조하여(혹은 개조하도록 만들어) 화폐를 유통하도록 하는 성산업-성형의 길목에서 대부업은 성형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선불금 무효가 되기 전, 그리고 미용성형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성산업에는 성형을 위한 대출이 존재했다. ‘눈 좀 찢으면 좋겠다, 가슴 좀 키우면 좋겠다.’며 업주들은 선불금을 빌려줬고 여타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돈을 갚으라는 명목 아래 여성들을 성산업에 고정시키는 장치로 활용 되었다.

선불금은 성산업의 업주들이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숙소비, 원래 갖고 있던 빚, 급히 필요한 목돈을 해결하라며 돈을 빌려주던 관행에서 시작되었다. 업주들은 백 일 안에 돈을 갚으라며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제한다. 선불금이 300만원이라면 이자는 100만 원 당 10만원으로 총 33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3만3천 원씩 갚아야 하는데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여성들은 3백만 원을 선불로 받으면 매주 231,000원, 한 달에 99만원의 현금을 선불금을 갚는 데에만 지출해야 한다. 여성들이 선불금을 1백일 안에 갚기는 요원하다. 되려 늘어나지만 하는 이자 때문에 결국 빚이 늘어난 채로 다른 업소로 이동하게 되고, 옮긴 업소에서 내 준 선불금은 고스란히 전 업소의 선불금을 갚는 데에 사용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여성들이 늘어나지만 하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성산업에 머무르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불금을 불법적인 행위(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인 무효채권으로 간주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성매매 특별법 제10조³⁾를 적용하기 위해 선불금의 형성과

2) “‘프로젝트로서의 몸’이라는 언설이 상징하듯이 현대 사회에서 몸 관리는 자기 관리의 중요한 양식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자기계발로서의 미용성형 소비>, 158 쪽, 태희원,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2012)

유지, 늘어나기만 하는 금액이 성산업의 부당한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증명해 왔다.

지금도 성매매집결지에서는 1-2천만원의 성형을 권하며 선불금으로 빌려주기도 하지만 룸살롱, 유흥주점 등의 업소에서 그렇게 큰 돈을 업주가 빌려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성매매특별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채권이 무효화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업주들은 여성들을 성산업에 고정시키기 위해 직접 큰 돈을 빌려주기 보다는 제3자처럼 보이는 대부업자들을 소개하거나 브로커를 소개하는 식이다. 많은 제2,3금융권의 합법적 대부업자들은 이러한 성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합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⁴⁾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중이다. 성형을 필수로 만들어 이를 위해 빚까지 내야 하는 성산업 안에서 성형대출은 다른 선불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정작 성매매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 이름은 성형대출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성형대출은 합법적 여성특화대출의 한 종류이며 성형대출의 문제는 성산업의 경계를 넘는 '여성' 전반의 문제임을 공유할 것이다.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가시화하고 법적·운동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

2. 성형대출피해 사례로 본 성형대출 커넥션의 실태

일반 대출상품을 성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⁵⁾ 우리는 성형대출피해 사례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게 만드는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드러내는데 성형만을 목적으로 한 대부업 사례가 적합하므로 '성형대출'상품피해 사례만 검토하고자 한다.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5)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성형에 이용하는 등 '성형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대출금을 성형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제외했다.

사례1) ‘텐프로’ 알선을 전제로 한 성형대출

이혼 후 주거가 불안정한 여성이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누군가(회사의 ‘이사’라고 소개함)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 대출을 받아 성형을 하면 ‘텐프로’ 업소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며 성형외과와 성형플래너를 소개함. 성형플래너는 성형수술비 2천3백여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할인’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대부업체 두 곳을 소개함. 2천만 원 중 1천 4백만 원은 성형외과로 바로 이체되었다고 하며 6백만 원은 이체받자마자 현금으로 성형외과로 지불함. 각기 공증을 작성하였으며 1천 4백만 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액(연34.9%)인 18,888,600원으로 작성함.

사례2) 성형대출과 유흥업소(성매매업소) 알선

연예계 관련 일을 준비하면서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원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방법을 찾던 중 온라인으로 성형대부업자를 알게 됨. 대부업자는 성형대출금액을 ‘고객의 아르바이트’로 ‘2달’ 만에 갚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와 일수업자를 소개함. 성형외과에서는 여성에게 가슴, 광대, 턱, 눈, 코 수술을 제안했고 수술비는 2천 2백만 원. 대부업체는 1천 2백만 원, 일수업자는 1천만 원을 빌려 줌. ‘술만 따르면 된다’고 했던 술집은 2차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고 수술비를 갚기 위해 성형수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계속 했지만 빛은 늘기만 함. 결과적으로 대부업체 14군데, 빛의 액수는 7천여만 원으로 붙어 남.

성형브로커는 성형외과와 대부업체를 여성에게 연결시키며 그 대가로 성형외과 수술비의 약 30%를 수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의료법 상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⁶⁾ 수수료를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사례1과 사례2 모두 대부업체가 ‘담보 없이, 무직의’ 여성에게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다. 사례2의 여성은 처음에는 성형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라고만 생각하고 방문하였으나 성형대출 및 성형수술이 진행되면서 대부업자가 성형브로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6)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사례1과 사례2의 브로커들은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브로커와 대부업체의 자신감 뒤에는 성산업-유흥업소가 있다. 사례1의 경우 텐프로를 소개해주겠다고 이사는 성형수술이 끝난 뒤 텐프로를 소개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이자를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스스로 성산업에 발을 디뎠다. 사례2는 대부업자가 직접 유흥업소를 연결했고, 여성은 성형대출을 갚기 위해 발 들인 성산업에서 더 많은 빚을 졌다.

직장이 없는 여성에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성형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수입과 담보를 노리는 약탈적 대출일 뿐이다.⁷⁾ 합법적인 법정최고이자율 27.9%도 높기만 하다.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까지 갚도록 하는 현재의 법규는 여성채무자를 성산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구조적 힘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성형대출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전무하다. 사례1의 경우 이사와 성형플래너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브로커와 의사의 연결고리 및 수수료 수령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성형플래너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례2는 7천만 원으로 불어난 빚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파산이라는 개인적 해결을 해야 했고 성형대출업자와 성형외과, 업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례3) 모델기획사, 성형대출, 성매매 알선

모델기획사를 차려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여성들을 모집함. 모델기획사 대표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여성들이 무료로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라며 여성들 명의로 자신이 소개시켜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수술이 끝나면 본인이 여성들의 채권을 갚아주겠다고 사기를 칩. 여성들은 대표가 소개한 대부업체 3곳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만큼을 빌렸으며 대략 3백만 원씩 세 군데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표에게 돈을 양도함. 모델기획사 대표는 여성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해외성매매 및 성매매, 070성인전화음대 등을 강요함. 모델기획사 대표는 여성들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을 챙겨서 성형 수술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살이 중임. 이와 별개로 여성들에게는 2천만 원어치 수술을 급하게 진행한 후유증 및 부작용, 대부업체의 대출금과 성형수술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음. 성형 수술비를 받지 못한 성형외과와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음.

사례3의 경우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모델기획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여성들은 여성들이 수령하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한다. 피해여성들은

7) <약탈적 금융 사회-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이현옥, 부키

재산으로 잡힐만한 집이 있거나 빚의 총 액수가 많지 않은 등 개인적인 이유로 파산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구속된 모델기획사 대표는 채권자가 아니었고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의 선불금 조항 역시 적용할 수 없었다. 피해여성은 20여명이 넘었는데, 그 중 7명만 성매매를 했고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대출금을 갈취한 모델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대표의 재산이 없는 한 그 돈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던 대부업체도 모델기획사 이름만 대면 대출승인을 해줬다는 여성의 증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자 대표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업체가 있다며 대부업체를 소개했다는 또 다른 여성의 증언은 대부업체가 모델기획사 대표와 커넥션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성형외과와 모델기획사 대표가 상호계약을 했음은 명백하나 입증 가능한 수수료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외과의 책임도 없다. 성형외과는 이미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받았으므로 여성들에게 성형수술비를 지불하라며 '고소를 하겠다', '술집이라도 나가라', '필요하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등 압박만 가할 뿐 일괄적으로 진행된 성형수술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성형외과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합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돈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은 어떤 여성들은 해당 사건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성산업으로 발을 들였다.

이렇게 성형외과와 대부업자가 계약을 맺고 성형수술을 외상으로 해주는 방법은 '후불성형'이라는 이름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⁸⁾ 기사에 따르면 '후불성형'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면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 30%와 대출이자 13%를 떼 나머지를 병원에 수술비로 건네는 외상영업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성형수술비는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풀려진 성형수술비는 고스란히 여성들 몫으로 남는다. 이 부당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례4) '합법적인' 유흥업소 알선과 성형대출

8) <'성형 貸出'로 환자 알선, 高利 뜯고 병원서 뒷돈>, 2015-05-08, 최희명 기자, 조선일보. <"수술비 대출해주겠다" 강남 성형브로커 구속>, 2015-05-07, 김동규 기자, 연합뉴스

이십대 초반의 여성이 학자금대출 및 휴대폰 연체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로 연락을 취함. 유흥업소의 실장은 2차 없이도 한 달에 5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며, 성형수술을 하면 1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룸과 생활비, 성형비용 대출을 제안함. 유흥업소 대표가 데리고 간 성형외과에서는 눈, 코, 턱, 가슴, 팔, 그리고 배와 허벅지 지방흡입을 권했고 며칠 뒤 유흥업소 관계자가 데려 간 공증 사무실에서 일수와 캐피탈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수에서 1천만 원을, 캐피탈에서 1천 6백만 원을 빌림. 보름 간격으로 성형외과가 제안한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한 달 뒤부터 바로 일을 하기로 했지만 수술 회복으로 일을 나갈 수 없었음. 공정증서에는 법정이자율이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대부업자들은 일수 1천만 원은 하루 10만원씩, 캐피탈 1600만원은 한 달에 200만원씩 값을 것을 요구함.

사례4의 여성은 기존에 있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로 연락을 취했다. 유흥업소의 실장은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방비용과 생활비용, 성형비용을 모두 (빌려)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여성은 '수입이 2배로 오른다'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다. 이는 사례4의 여성만이 받는 제안이 아니다.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인 '여0알바'에는 성형과 숙소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문구가 허다하다. 물론 여기서 지원은 무료로 제공이 아니고 비용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이다. 이룸이 만나는 또 다른 내담자는 성형대출을 받으려면 여0알바에 가보면 된다고 말하며, '여0알바를 통해 유흥업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 성형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 나와 있더라'는 후기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례1.3.4 모두 파산하기에는 적고, 개인회생하기에는 많은 빚을 졌다. 파산도 개인회생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의 여성 채무자들이 한 번의 대출로 성산업에 들어온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여성들은 '스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성형대출비용은 앞 사례의 여성들에게 성산업에 들어오는 힘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성형대출은 채권자가 여성들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대부하였는지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 상의 선불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사례4의 경우 유흥업소 일을 시작하게 만든 학자금대출은 파산할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파산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개인회생을 하기로 했으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 동안 일정하게 갚아야만 한다. 개인회생은 부당한 과정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고, 성형외과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받았을 유흥업소 관계자들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다. 여성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의 개인회생은 여성에게 차악의 선택지일 뿐이다.

정리하면, 브로커 혹은 업소를 통해 대부업체를 소개받아 진행하는 성형대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출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성형수술비를 부풀린다.
- ② 높은 성형수술비를 책정하기 위해 과잉진단, 과잉 수술이 진행 된다.
- ③ 높게 책정된 성형 수술비에 높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스스로’ 성산업에 들어온다.

이에 대응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소개받아 ‘합법적’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성형대출의 합법화
- ② 2차가 없는 ‘합법적’인 유흥업소 알선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수수료 착복을 증명하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 ④ 나이가 어리고 다른 빛이 없을 경우 파산으로 해결할 수 없다.

즉, 성형외과와 대부업체, 유흥업소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없고 각종 법의 불법적 영역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에 성형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채무자의 몫으로만 남으며 성형대부업자와 성형외과, 유흥업소의 책임을 물음만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3.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성형과 성형대출

많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형대출을 받건 아니건 상관없이 성형수술 혹은 시술을 감행한다. 이룸이 만나는 내담자들 중 성형대출을 모르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성형대출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인터뷰를 하며 ‘성형대출은 무조건 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이라며 ‘절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불법 성형 대출이 많이 알려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내외 성매매동향을 다루는 「여성과 인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약물/알콜/다이어트와 함께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여성에게 강제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성형을 다루었다.⁹⁾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체를 변형해야 한다는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의 ‘필요’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¹⁰⁾

9) <성매매현장의 약물, 알콜, 다이어트, 성형강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정미, [여성과 인권] 2016년 상반기 제15호

10)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과정에 대한 연구>, 60쪽~65쪽,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특히나 이 대출을 받는 애들은 또 그런 쪽 업소에 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쁜 애들이 초이스 되지 못한 애들이 초이스 안 돼. 그런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 사이에 하루에 버는 수입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코 좀 해가지고 코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삼사십만원 더 벌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애들이 수술비 삼백만원인데 코 수술한단 말야. 그래 한번하면 삼십 더 벌겠다고 하니까 그래 열 번만 나가면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는데 업소 애들은 수입에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¹¹⁾

보고서 첫 부분에서 간략하게 서술했듯이 유흥업소에서 여성의 몸은 말 그대로 상품이다. 여성의 몸이라는 상품은 유흥업소 종사자 제도 아래에서 남성의 흥을 돋우는 일이라는 명분 아래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성산업에서 거래되는 것은 성적 서비스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산업의 여성들은 성적 서비스를 익히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확실한 자기투자행위가 성형이라는 사실은 성산업에서 거래되는 것이 무형의 ‘성적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한 외모-몸인 현실을 반증한다.¹²⁾ 상품으로서 나의 몸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개조하고, 평가하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몸으로의 변형은 유흥업소 일을 잘하기 위한, 즉 ‘초이스’를 많이 받고 잘 팔리기 위한 확실한 자기투자로 여겨진다.

김주희는 ‘초이스’를 남성 구매자들이 업소에 진입하여 자신이 구매할 상대 여성을 선택하고 지불을 결정하는 단계로 여성과 현금이 교환되는 매매 그 자체의 순간¹³⁾이라 설명한다. 여성들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혹은 성산업의 위계에서 어떤 업종에 적합한 외모/몸 인지를 측정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성형을 시도한다. 측정의 기준은 구매자들의 ‘초이스’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여성들 간의 상대적 비교이다. 남성 구매자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여성들을 첫인상, 즉 외모로 평가한다. 여성들은 구매자에게 초이스를 받기 위해 외모관리(다이어트, 성형수술, 시술)를 한다. 남성들의 초이스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유흥업소의 여성은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화한 시선을 내재화하여 본인의 몸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이는 유흥업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자 그대로 직업적인 면이다.

사례5) 유흥업소 영업진의 성형대출 알선

2차가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업소의 영업진이 성형대출을 직접 소개함. 대부업자

11) 이룸과 성형외과 홍보팀 직원의 인터뷰 중

12) 성구매자 후기 사이트에는 여성의 체형과 얼굴에 대한 상세한 묘사 및 마인드(순종적인 태도)에 대한 평이 주를 이룬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역시 몸이 거래됨을 보여준다.

13) 120쪽,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형대출을 많이 받으며, 업소에서 일 한 돈으로 성형수술비는 '2-3달'이면 갚을 수 있고 성형대출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설명함. 대부업자가 자기 회사랑 같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성형외과를 소개했고, 제대로 된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 뒤 관리하는 방법 정도만 설명을 들음. 유흥업소와 대부업자가 같이 성형수술 과정에 개입함. 수술 뒤 성형대출을 갚기 위해 2차를 더 강요당했고, 돈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다 몸이 상해 하루만 쉬어도 이자가 크게 늘어났음. 돈을 제 때 못 갚으면 집에 찾아오고 괴로울 정도로 전화를 함.

이런 '일'을 하는 유흥업소의 마담, 실장 등의 영업진들은 사례5처럼 여성들의 외모를 마땅히 평가하고 어떤 업소에 어울리는지 알려주며, '더 높은' 업소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를 성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이렇게 미용성형이 일의 영역, 직접적인 자기투자의 영역인 유흥업소라는 공간에서 성형대출, 성형수술이 횡행하고 이를 갚기 위해 열심히 성매매를 해야 하는 현실은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의 몸-외모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한 평가, 이로 인한 몸 관리는 끝이 없다. 게다가 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일관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화류계 커뮤니티에서는 '유행따라 성형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서로의 얼굴과 몸을 등급매기고 평가한다. 다양한 여성들의 외향을 보며 텐프로급인지, 가라오케급인지, 룸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를 가늠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여성들은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서로의 얼굴과 몸을 상대적으로 비교/경쟁하며 끊임없이 성형과 재건을 시도한다.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스스로의 부족분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여성혐오에서 비롯한 자기혐오에 가깝다.¹⁴⁾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성형에 대한 '필요'는 유흥업소 일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돈이 몰리자 의사들도 몰리면서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미용성형산업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대부업은 이러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필요'를 포착하여 성형대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홍보한다.

14) '우에노치즈코는 여성혐오는 남녀에게 이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남성에게는 '여성멸시',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로 나타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여성의 '자기혐오'를 여성혐오의 효과로 보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제나 룸살롱 종사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몸 가치'의 부족분을 깨닫도록 만드는 성매매 산업의 등급화 과정 역시 여성 혐오에 기반한 구조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115쪽 각주,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의 몸에 기대 이윤을 만들어내고, 상품으로서 여성의 몸 가치를 측정하고 위계화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제도-성산업이 있는 한 성형대출은 범망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변형될 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한국은 순자산액 1천만 원으로도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대부업 과잉을 조장하는 국가이다. 성형외과 못지않게 우후죽순 생겨난 대부업체는 1만 2백여 곳¹⁵⁾으로 이들에게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 즉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대부업은 성산업의 여성들이 돈이 필요해서 성산업으로 들어오거나 머물고 있는 현실을 안다. 그리고 여성들을 향한 뿌리 깊은 낙인을 활용한다.

대부업자들은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의심받을 만큼의 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만¹⁶⁾ 단지 한 명의 여성에게 큰 액수를 빌려주지 않고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부업체는 이 여성의 ‘여성으로서의 몸’, 남성구매자에게 초이스 되어 팔릴 몸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 읍 단위의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3억을 벌어들이는 한국사회다.¹⁷⁾성산업이 자원이 없는 여성들의 유일한 생존터가 되는 한, 성구매가 남성문화로 남아있는 한 대부업체는 든든한 아군을 갖는 셈이다.

또한 성판매 여성을 추심하는 일은 굉장히 쉽다. ‘네가 이쪽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 한마디면 여성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여성을 향한 이중적인 성적규범과 이에서 비롯한 성판매 여성을 향한 낙인과 차별을

15)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 대부업체 통합조회 9/21일자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업소의 여성이 도망갈 위험이 크며 담보가 없고 마이킹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3백만원 이하의 소액만 빌려준다. 330~332쪽, 357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김씨 등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25일부터 2014년 9월4일까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1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들, 징역형+ 추징금 3억+건물 몰수보전>, 2016-06-23, 박효익 기자, 뉴스원

민고, 대부업체는 성판매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성산업은 여성들이 갚아야 할 돈이 많을수록 든든하다. 빛이 많은 여성일수록 성산업에 오래 머문다. 성산업의 유일한 상품인 ‘여성’의 숫자가 많을수록 성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성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들에게 여성을 향한 대출(상품)은 많을수록 좋다. 성산업의 관리자들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상품)을 연결하여 그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성매매현장의 약물, 알콜, 다이어트, 성형강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¹⁸⁾에 따르면 룸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손님을 직접 연결시키는 마담이 성형대출을 강요할 때 이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형대출을 받는다고 한다. 성형외과 홍보팀 직원은 인터뷰에서 업소의 중간관리자인 마담이나 실장이 성형대출을 연결하는 이유를 “장사도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지만. 소개를 시켜주면 “업자들한테 또 돈을 받”기 때문이라 답했다.

미용성형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성형외과의 수입은 당연히 높아진다. 한국은 인구 당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세계 최고다.¹⁹⁾ 돈이 안 되는 다른 과의 의사들이 성형산업으로 몰리는²⁰⁾ 성형시장의 과잉경쟁 속에서 몸의 구석구석을 성형하고, 유행에 따라 재건하는 성산업의 여성들은 놓칠 수 없는 고객(=돈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성산업과 대부업, 성형산업은 성형대출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함께 여성의 몸을 착취하며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 세 산업에 대한 허술한 법적 규제 및 처벌이 이러한 착취를 강화하고 조장한다.

5. 구조적 책임을 묻는다 -성형대출에 개입하기 위한 법률 정비

대부업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성매매특별법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성형대출이기에 현행 법 상으로는 여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을 활용하여 이윤을 착취하는 유흥업소를 비롯한 성산업, 성차별적인 문화를 믿고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물리며 성차별에 기댄 추심을 자행하는 대

18) <성매매현장의 약물, 알콜, 다이어트, 성형강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68~69쪽, 이정미, [여성과 인권] 2016년 상반기 제15호

19) 10만 명당 4.05명 수준. <롯데 높던 강남 성형외과도 최대 50% 할인>, 2016-02-16,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20) 이룸과 성형외과 홍보팀 직원과의 인터뷰 중 인용

부업, 여성이 스스로를 계속 변형하고 개조하겠다는 ‘욕망’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성형산업이 서로 공모했을 때만 지금과 같은 성형대출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이제부터는 성형대출로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 성형대출피해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성형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들의 빈 부분을 살펴보는 일은 그 첫 단계이다.

가. 여성관련법률의 정비

1) 성매매특별법 상 선불금 해석의 확대

위에 거론 된 사례 모두 성매매특별법 상의 선불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는 선불금으로써 무효인 채권이 되려면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채권자가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어야 한다. 성산업에서의 선불금은 단순히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불금이 여성들을 성산업에 얽매이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성매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에서 다뤄진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형대출은 다른 선불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인입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형대부업자들이 여성들의 ‘성매매’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따라 성형대출 채권을 성매매 선불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무직의, 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성에게 큰 액수의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부업자의 자신감은 성산업의 현금흐름을 믿어야만 생긴다. 빈곤한 여성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혹은 빚을 갚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에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성산업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성형대출피해의 책임을 여성이 아니라 채권자 혹은 채권자를 알선한 자들이 지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2) 유흥업소종사자제도의 반여성적 속성을 고려한 대책 필요

2차 성매매가 없(다고 여겨지)는 유흥업소에서의 접대업무는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합법적인 접대업무만 있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며 ‘유흥업소’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한다.

사례6) 유흥업소 사장이 채권자인 경우

여성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계약하고 업주로부터 숙소비 등을 이유로 선불금 5백만원을 대여함. 업주는 선불금을 대여한 후 2차(성매매)를 강요했고 여성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돈을 천천히 갚겠다고 했으나 업주는 2차를 하지 않겠다고 당장 전액을 갚으라고

강요하여 결국 여성이 업소로부터 도망 나옴. 업주가 여성들을 취업사기로 고소하였고 여성들은 처벌을 받음. 후에 대여금 소송이 걸려와 대응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성매매 선불금 인정을 받지 못함.

사례7) 유흥업소 마담이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유흥업소의 관리자(마담)로서 종사자인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음을 인정 하지만 2차(성매매)는 강요한 적 없으며 여성 스스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걸어 옴. 상담소와 여성은 채권자가 2차 알선의 대가를 받아갔음을 주장하며 성매매 선불금임을 주장하였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만 적용되었고, 성매매 선불금은 인정받지 못함.

2010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매매 중 일반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의 규모는 53.9%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성매매 규모는 12.8%, 키스방 휴게텔 등의 변종성매매업소를 통한 성매매 규모는 3.9%로 이 세 업종은 전체 성매매 규모 중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위의 세 업태와 오피스텔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를 넘나들며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성매매, 즉 남성 성기의 삽입을 통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므로 이 공간에서 만 들어지는 빛은 선불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성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유흥업소라는 공간은 여성을 남성의 흥을 돋우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위치시켜 성차별적 내용을 강화, 유통,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여성을 몸으로 평가하고, 유흥업소에서 몸/외모로 평가당하는 과정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의 영역이다. 이러한 유흥업소 종사자 직무의 성격에 변화가 없다면 대부업이 ‘성형대출’이라는 상품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2011년 진행 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는 유흥주점의 성매매 매개 역할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원 관련 법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²¹⁾ 성형대출을 비롯하여 유흥업소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피해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성매매 선불금 해석의 확장과 더불어 유흥업소 전반에 대한 법률 정비와 함께 유흥업소라는 반여성적인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21) 유흥접객원 관련 법 개선 방안으로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안,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존속하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삭제하는 안, 3. 유흥주점영업 운영 개선방안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 정비, 나.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다. 선불금 등 빚 문제의 해결지원, 라. 근무환경 및 보장지원 체계 개선, 마. 시민감시체제 운영 4. 유흥주점영업 관련 사회문화 개선방안 가. 성평등하고 건강한 회식 및 접대문화 구축, 나. 시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을 제안한다. 118~129쪽,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여성가족부

나. 약탈적 대출인 여성대출을 둘러싼 법률 정비

성형대출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성대출상품의 한 종류로 봐야한다.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성형대출은 ‘합법’적인 여성대출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형대출피해에 대응하기가 녹록치 않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수입과 담보를 노려 생활을 뿌리째 뽑는 약탈적 대출 전반을 규제함으로써 성형대출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약탈적 대출의 불법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한국에서²²⁾ 여성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여성을 위한 복지는 이성애중심가족제도의 출산과 관련해서만 협소하게 추진되고 자원이 없는 여성들의 옆에는 복지 대신 금융이 자리한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미즈사랑/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곳의 대부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여성대출잔액이 3조 642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 9096억 원보다 1546억 원이 증가했다고 한다.²³⁾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제1금융권은 여성을 외면한다.²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2금융권의 대출비중은 2012년 이래로 줄곧 증가추세로, 2015년부터는 전체 대출대상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이 50.6%로 절반을 넘어갔다.²⁵⁾

22) ‘통계청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격차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으로 나눈 값을 성별임금격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주요 유럽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일본보다도 그 격차가 10%p 이상 크다.’ <위클리펀치(453)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수준’>, 2015-05-06,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3) <여성 노리는 고금리 대부업… 상반기 대출액 작년보다 1546억 증가>, 2016-10-09, 이하나 기자, 여성신문

24) ‘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 343억 원(23만 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 9546건)의 41% 수준에 그쳤다.’ <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 노출…TV광고 제한”>, 2016-10-09, 신종철 기자, 로이슈

금융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부업체가 여성을 공략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이 여성을 외면한다는 점, 여성은 상환률이 높고 추심에 약하다는 점²⁶⁾ 을 꼽는다. 여성대출을 홍보하는 대부업자들은 여성대출상품이 여성우대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여성대출은 돈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대부업자를 배불리는 상품이다. 약탈적 대출인 여성대출을 금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처벌이 필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의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더라도, 차입자의 채무능력상황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성매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의 형태가 해당되죠. 이것 하고 차입자가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자체도 무효화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차입자를 기만해서 그 대출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고 하는 경우, 유해한 대출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성매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전세보증금, 핸드폰, 통장을 이용한 다양한 약탈적 대출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규제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²⁷⁾

약탈적 대출 전반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굳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성형대출 등 여성대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빈곤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대출이 감소할 것이다.

2) 추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별을 고려한 정책 마련

성형대출 피해자들은 대부분 추심으로 괴로워하다 상담소를 찾는다. 많은 신체부위를 한 번에 수술했기 때문에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온다.

김주희는 여성 전용 대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채권 추심의 용이함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관련 민원에 따르면 총 767건의 민원 중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은 여성 54%, 남성 36%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25) '여성 고객의 신규 대출 건수는 2012년 24만3400건(41.8%)에서 2013년 30만1972건(43.5%), 2014년 38만3998건(48.1%)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금리 대부업에 노출된 여성들>, 2015-10-6, 이재욱 기자, 한겨레신문

26) <연체율 女 < 男... 금융권 대출 여성 우대>, 2009-11-19, 유영규 김민희 기자, 서울신문

27) <기획좌담회> 성매매여성들의 경제 사범화와 대처방안>, 122~123쪽, [여성과 인권] 2016년 상반기 제 15호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폭력의 기술인 채근, 협박, 위협, 괴롭힘, 인격적 모독, 물리적 폭력 모두 여성에게 노출되기 쉽다.²⁸⁾ 불법 사금융 전문가인 송태경은 이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업자들이 업소여성우대를 넘어, ‘여성’이라는 성별만을 이유로 소액대출을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의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라는 이룸의 질문에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안정적 소득원이며 미래 소득이 있고, 추심에 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부업 시장에서 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채시장이 성황 했다. 대부업 시장이 번성하기 전부터.”라고 대답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성인 가족에게 ‘네 딸년 잘 관수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네 딸 주민번호로 대포폰, 대포차 다 써버린다.’는 말을 반복하며 성적인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는 전화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사채업자, 추심하는 자들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심리적 압박이 크고 여러 면에서 만만하다. 편법동원이 용이하다.”고 답했다.

2016년 11월부터 금융 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²⁹⁾ 전체 대부잔액의 88.5%를 차지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459개는 지금까지보다는 강화된 채권 추심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추심 법률에는 반복적으로, 문자나 음향을 통해서 채무자를 두렵게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한 전례는 전무하다고 한다.³⁰⁾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법률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배포하는 활동에 더해, 이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실행해야 한다.

사례8) 채권추심피해에 대한 미약한 수사 의지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 나온 뒤 업주를 소개시켜 준 소개소 사람이 여성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 여성의 가족과 주변 동네 사람에게 여성의 성판매 경험 사실과 채무내용을 알림. 그 뒤 여성이 숨어있는 도피처를 찾아 내 밤새 차에 탄 채 여성들을 감시하고, 새벽에 전화를 하여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운영할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라는 협박을 가함.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녹취하여 채권자를 성매매 알선으로, 소개소 사람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성매매 알선관련 조사만 진행하고 후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추심 피해를 수사하는 기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심의 성차별적 부분들을 적극

28)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과정에 대한 연구>, 92~93쪽,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2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0)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과정에 대한 연구>, 91쪽,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적으로 수사하여 불법 추심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사례8과 같이 성판매 경험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알리는 행위는 성판매 여성이 여성의 삶 근간을 흔드는 인권침해의 문제³¹⁾이다. 성판매 여성을 향한 낙인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겠다.”는 위협은 무엇보다 강력한 추심행위이다.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은 이에 대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사, 처벌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다. 성형대출이 가능한 구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외에도 성형대출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묻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성형대출비용을 부풀리는데 일조하는 대출중개제도를 폐지하고, 높은 법정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파산과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를 소각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미용성형 및 미용성형시장 관련 법규 역시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³²⁾

6. 나가며: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끊어내기 위하여

여성인권적인, 여성주의적인 성형은 없다. 미용성형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외모의 결핍, 부족함을 발견하게 만든다. 여성 정치인의 옷차림과 외모가 기삿거리인 지금을 사는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하든 외모로 평가받는다. 미용성형은 여성을 개별 인간이 아닌 성적인 몸으로 환원하는 오랜 여성억압의 역사의 흐름 위에 있다.

정부조차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금융을 복지의 일종인 양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금융의 본질적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약탈적 대출이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금융은 본래 약탈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금융의 약탈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화폐 소유 여부에 따라 삶의 질 뿐 아니라 생존이 갈리는 현체제의 ‘당연함’은 반인권적이다.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이런 속성을 지닌 미용성형과 대출에 의존하는 생활은 일상이다. 성형대출을 통한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끊어내기 위한 여성운동

31) <성판매 여성에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207쪽,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32) <의료상업화의 첩경, 미용성형산업-의료 측면의 규제 방안>, 이상윤, [한국의 성형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 출구’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을 상상한다. 성산업의 철폐를 주장하는 운동이 여성해방을 외치는 운동과 결을 같이 하는 것처럼 성형대출을 쫓아내는 운동은 여성대출을 조장하고 여성의 빈곤을 유지시키며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여성의 능력문제로 전가시키는 2016년의 한국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운동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금융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는 정책 말고 무상교육, 무상주거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성형관광을 유치하는 등 미용성형을 조장하여 미용성형시장을 키우는 정책 말고 미용성형 없이도 여성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남성의 흥을 돋우기 위한 유흥업소,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들어 남성들에게 성적 통제권을 구매할 기회를 주는 성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금융에 의지하는 일상은 성산업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 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지금을 사는 모두의 이야기이다. 모두가 금융자본에 의해 착취당한다. 성형대출은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과 낙인을 모두 활용하여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추심전략에 활용하는, 수많은 금융상품 중 금융의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품이다. 지금 유행하는 여성대출상품에 씌워진 비밀보장, 무담보, 여성우대 라는 포장을 벗기면 성형대출의 차별적, 약탈적 내용을 다른 여성대출상품들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성형대출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면서 성산업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고, 개개인의 욕구가 사회구조적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대출상품에 대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성형대출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대부업자들은 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 여성들의 몸을 착취하며 이익을 취하는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을 때려잡는 운동을 같이 상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순영(2011), 『대출 권한하는 사회』, 후마니타스.
송태경(2011), 『대출 천국의 비밀』, 개마고원.
표정선(2012),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 해체는 불가능한가」, 반성매매인권 행동 이룸.
태희원(201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자기계발로서의 미용성형 소비」, 페미니즘 연구 제12권 1호.
제윤경, 이현옥(2012), 『약탈적 금융 사회-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부키.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6), 「여성과 인권」 통권 1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김주희(2015),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민우회(2013), 「한국의 성형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 출구」
여성가족부(2012),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 성형대출사례 모집에 도움 주신 분들

- 다시함께상담센터
- 충북여성지원센터 늘봄
- 이룸과 함께하는 내담자 분들

* 성형대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 성형외과 홍보팀 직원 K씨

【토론①】

미용성형 및 미용성형시장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 들어가며

- 성산업에서 성형이 제안(강요)되고, ‘실천’되기까지 과정의 핵심이 ‘초이스’에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함. ‘남성’에게 선택되기 위한 여성들의 ‘자기개발’로서의 성형.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을 별하고 싶은 마음이 덧붙여진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됨.
- 남성이 대부분인 면접관 앞에서 여성들은 직무능력보다 ‘여자’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외모’로 평가받지 않고, 결남출(결혼계획은? 남자친구는? 애는 낳을 건가?)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채용과정의 상황은 성산업의 여성들이 놓인 “남성 손님에게 초이스를 받아야 함”과 닮아 있음.
-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욕망이기도 한 ‘예뻐지고 싶다’, ‘예뻐져야 한다’는 것을 성형수술로 실현하려는 ‘실천’, 적극성을 띄는 여성을 ‘성형괴물(성괴)’과 같은 말로 혐오하는 것. 여성들이 왜 성형수술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물음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여김. (예를 들어,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해 문제가 생기거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 등)

- 발제문에 소개된 사례들처럼 연예계, 모델로 일하려면 성형을 하고, 성상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유, “술집이라도 나가라” 라는 채권자 대부업자들의 말에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에 적극 동참함.
- 돈이 없는 여성들은 성형외과 무료수술 홍보이벤트 응모, 소셜커머스 할인에 올라온 성형외과를 찾거나 성형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성형산업,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이토록 완화되는 것인가. 누가 여성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가. 그리고 당연하다고 말하는가. 질문 받지 않는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나 미용성형산업의 확장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간 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성형 권하는 사회 : 수정가능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서의 몸

공식의료시장이 아닌 성형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 중 휴게시간(1시간 이내)을 이용한 간편 시술 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신체관리와 외모에 대한 과도한 기준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형의료산업의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수술 건수가 늘면서 자연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부작용 사례 중엔 감각이상 28.1%로 가장 많았고 비대칭 23.6%, 교합이상 20.2%, 함몰 5.6%, 턱관절 장애 4.5% 순으로 나타났다. 복시나 청력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³³⁾. 그러나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이 연간 몇 건이나 이뤄지는지, 누가 왜 어떤 수술을 받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히 밝힌 조사는 아직까지 없다.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은 자신감, 자아 존중감 회복 등 심리학적인 상식을 동원하거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권유'되지만, 동시에 고통, 위험, 불확실성 등을 들어 성형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제'할 것 또한 강조되는데, 이 모순적인 지형은 성형의료산업의 주체들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³⁴⁾.

33)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3일마다 응급차..." 성형외과 관계자 고백
 [성형권하는 '대한민국']강남 성형 거리 2~3일마다 응급차 "양약수술 매우 복잡"
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911311802859&outlink=1

2. 모두가 언제나 외모에 대해 말하는 ‘외모피로사회’ : 수치심 촉발하는 사회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어 사랑이나 소속감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³⁵⁾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한다. 넘쳐나는 성형/다이어트 광고, 미디어에서의 외모비하 발언 등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엄마, 학교 오지 마! 창피해!”는 2014년 본 단체에서 SNS를 통해 제보 받은 ‘최악의 성형광고’ 중 하나의 광고문구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형 다이어트 광고와 패션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실재하기 힘든 신체 이미지를 이상향으로 제시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기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또한 ‘싸이깍 thigh gap(무릎을 올 붙이고 섰을 때 양 허벅지 사이에 생기는 간격)’, ‘애플힙apple hip(사과처럼 곡선이 살아있고 탱탱하게 힘업된 엉덩이)’이나 ‘잇몸녀(웃을 때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여자)’, ‘스크림녀(공포영화 범인이 쓰거나 괴기스러운 가면처럼 흉하게 생긴 여자)’, ‘청글녀(청순하고 글래머인 여자)’ 등 여성 외모에 대해 더욱 세세해진 기준이나 평가를 담은 신조어³⁶⁾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요즘엔 임신한 여성들이 날씬한 팔다리를 드러내는 D라인 사진 찍기와 다이어트가 유행이다.³⁷⁾ 이 역시 대중매체가 선도하고 있다. 개그프로, 토크쇼, 드라마를 막론하고 방송에서는 아직도 특정 외모에 대한 비하를 통해 웃음을 유도한다.

비단 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일상적인 ‘외모 관련 발언’에 대해 익숙하다. 가족, 친구, 직장상사나 동료 등 서로에 대한 외모 지적 및 평가는 ‘당연한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특히나 외모관리는 스펙으로 자리 잡아 외모는 곧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이어트, 성형 등 외모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³⁸⁾

34) 태희원(2011), 미용성형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 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 민우칼럼 82호.
 35) 브레네 브라운, <왜 나는 내 편이 아닌가>, 2012
 36) goo.gl/sRsckB <국립국어원 신조어 공개, 여성 외모 비하 단어 많아…청글녀+김치녀+잇몸녀?>, 조선일보, 15.10.09
 37) goo.gl/7u4jVR <한혜진·손태영·소유진, 만삭화보로 보는 아름다운 D라인>, K스타일리포트, 15.07.14
 38) <대학생 95.5% ‘외모는 경쟁력’… 성형수술 의사 있다>, 헬스오, 정종우 기자.



생긴 대로 살 자유를 잃고, 피로감에 짓눌린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외모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강력한 외모 기준으로 인해 무리한 성형 및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외모 꾸미기를 '실천'한다. 특정 외모를 갖춰야 한다는 협소하고 강력한 기준은 일터에서도 역시 강력하게 작용하여 많은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부터 이후 일터의 외모 규정³⁹⁾ 및 외모 지적 문화⁴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모 차별 사회'- 분명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을 다시금 강력히 이어갈 필요성은 충분하며, 많은 여성들이 이에 동참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외모에 대해 만연한 수많은 말들이 모두에게 수치심을 각인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할 시점이다.

3. 여자다워지느라 아프다 :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또한 우리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등의 '신체왜곡 현상'을 보이는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 성인 여성의 53%, 청소년의 64%는 체중감량을 시도한다. 그 방법은 주로 금식, 이뇨제, 설사제, 원푸드 다이어트, 수술 등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빈혈이나 섭식장애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여성의 신체왜곡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남성의 빈혈 유병률은 20-40대까지는 2%미만이며, 그 이후 다소 증가하지만 여성은 20-40대는 16%로 높다가 그 이후 다소 떨어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¹⁾.

(2015. 10. 07.) 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1327972408&seq=14603

39) <막말·성희롱에 하소연도 못해... 비서들, 조합 만들었다>, 한겨레 신문, 허승 기자, (2016. 01. 17)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614.html

40) <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 '회사에서 성희롱 당했다'...유형 1위 '외모 관련 발언', 2위 '음담패설', 3위 '신체접촉'>, 데이터뉴스, 장진숙 기자, (2016. 01. 16), 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0135

41) 한국여성민우회(2012),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복지 과제 네 번째, 건강 : 건강보험 및 생활건강> 재인용.

요즘과 같은 “이미지가 막강한 사회적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의 도래는 여성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을 변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대중적으로 확산⁴²⁾”시켰다. 대중매체의 등장, 여성잡지, 미디어 속 다이어트와 성형솔루션 프로그램의 기승은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다.

아침방송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수술 혹은 시술, 새로운 다이어트 비법을 추천하며, 여성의 나이 들을 부자연스럽게 받아드리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우리는 ‘10년 더 젊어지자’, ‘한 번에 예뻐지는 비법’, ‘한 달이면 날씬해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 같은’ 등의 온갖 광고 문구들로 ‘시간을 빗겨가는 몸’과 ‘얼굴은 청순하고 몸은 S라인’인 비현실적이고, 획일화 된 몸을 꿈꾸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상적 외모가 상징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왜곡된 몸의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원푸드 다이어트, 연예인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공포영화 다이어트” 등 각종 이름을 딴 다이어트도 수 만 가지는 되는 사회,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몸규범’은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민의 이슈이며, 남성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 요구되고 있다.

4. 여성건강정책 되돌아보기 : 몸다양성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초등학생 때부터 60대가 넘어서까지 평생의 미션인 다이어트의 힘겨움과 혼란에서 ‘여자다워 지느라 아픈 시대’를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까? 자신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관리도 못하는 게으른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 자기 육체 통제에 관한 문제, 사적영역의 문제로서의 다이어트와 성형이 아닌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몸규범’, 생활패턴의 역습의 원인을 파악하고 알려내는 사회적인 환기와 대안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우회 나아가 여성운동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와의 지난한 싸움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들은 아프지 않고, 자신의 몸을 긍정하며 마땅히 건강을

42) 한서설아(2000), 『다이어트의 성정치』, 책세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대중화된 과학지식보다, ‘여자는 여자다운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젠더 규범 자체가 불건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몸의 변화, 질병의 유무, 의료적 처치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과 선택에는 ‘여성성의 훼손 또는 보존’이라는 관점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미용 산업과 성형의료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몸을 ‘아름다움’과 연결시키고 있다면, 국가는 그 정도와 방식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 무차별적 시장 확장을 제어하는 동시에 몸을 새롭게 ‘건강’과 연결시키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⁴³⁾

5.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다⁴⁴⁾

누구나 성형을 선택할 자유?

한국 미용성형 시장의 규모는 약 7조 5천억 원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며⁴⁵⁾, 인구 당 성형수술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7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40대 여성 1,000명 중 78%가 성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통계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형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한 반에 절반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 보톡스를 맞으러 다녀오는 일은 이제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이 시대에 성형은 이제 ‘내 몸을 사랑하기’, ‘결점을 극복하고 당당해지기’ 위한 합리적 방편처럼 홍보된다.

누구나 노력과 투자에 따라 외모를 고칠 수 있으니, 여성들은 외모 압박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졌을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는 왜 쌍꺼풀 수술 안 해?’라는 질문이 보여주듯 성형은 자기관리로 일반화되고, 더 나은 외모에 대한 획일적 기준도 강화되었다. 코의 각도와 눈매의 길이, 가슴의 비율 등 그 기준은 더욱 더 세세해지고, 모양과 수술방식의 유행은 빠르게 변화한다. 3년 사이에

43) 전희경(2012),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 다양한 몸이 허용되는 사회, 평생건강을 고려하는 사회”,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44) 2015,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민우ing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다”, 김진선

45) 2014, 한국소비자원,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배가 급증한 성형광고는 쉽고 빠르고 안전한 성형으로 남들보다 예뻐지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동시에 성형으로 인한 사망 사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성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이라거나 “‘성괴’가 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돌린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미용성형을 하고, 성형을 했던 하지 않았든 압박과 비난, 조롱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이나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문제적이다. 그래서 2015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은 이를 ‘성형 산업’과 관련된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비대해진 성형 산업 안에서 이익을 얻는 주체들이 어떻게 맞물리며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기획단 <성형산업스파이>가 꾸려졌고, 7월부터 10월까지 성형외과 방문상담, 실태조사, 인터뷰를 통해 성형 산업의 구체적인 현실을 직접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 2015년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다> 인터뷰 발췌

○ 온라인 성형정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정보유형은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후기 87.0%, 옥외광고 79.4%, 인터넷 배너 광고 65.9% 순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실)

“성형수술 후기를 쓸 때 바이럴마케팅 업체나 병원에서 수술 관련 정보는 따로 챙겨주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 짜깁기해서 가짜로 쓰는 거예요. 사진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다운받아서 돌려쓰면 되거든요. 남자 알바생이 가슴 성형한 여자인 것처럼 막 쓰고. 지식인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답글을 다는 자문자답을 하기도 하고요. 하루에 몇 십 건씩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그렇게 막 올렸는데 제 아이디로 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쪽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00, 20대, 바이럴마케팅 알바 경험자)

“가입 1년 후에서야 그 성형카페가 병원이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후기 글이 교묘히 제가 수술했던 그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성형외과 마케팅 팀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도 속아 넘어간 거죠.”(조00, 30대, 성형외과 마케팅 팀장 경력자)

* 바이럴마케팅이란, 네티즌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SNS, 이메일 등의 매체를 통해 어떤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하도록 만드는 마케팅 방법의 일환이다.

○ 의료이건 한데 파격할인이 가능하다?

“솔직히 할인가격이 아니고 원래 그게 그 가격인거예요. 부풀려서 원래 얼마인데 이렇게 할인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김00, 20대, 前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정가가 없고, 비급여 항목이라 수술비 할인은 불법이 아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할인 폭을 크게 내세우면 처벌 대상’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와 의사가 직접 돈을 주고받지만 않으면 괜찮다며 병원 측에 환자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모아 줄 테니 이익금을 나눠 달라고 접근하는 브로커도 있는 현실이다. (중앙일보, 2013.4.24., “싼 곳 가자니 불안” 천차만별 성형수술 가격, 기준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무신데, 술 드시거나 그러진 않았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술이 문제라기 보단 이 제품하고 고객님하고 잘 안 맞는 거.”
 “여태까지 저희는 다 코끝 했어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좀 계세요. 우시고 속상할 일은 아니야.”
 (허00, 20대, 코필러 부작용 경험자 제공 녹음파일 중 실제 상담실장 발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5천 건을 넘었다. 이 중 70%정도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피부미용시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사례도 매년 50건을 넘는다. (뉴시스, 2014.12.8., “끊이지 않는 의료분쟁, 피해자 구제는 산 넘어 산”)

○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

“인터넷에 의료 소송을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에요. 괜히 소송 했다가 법에 ‘법’자도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면 그 뒤엔 어찌나요? 지금 이렇게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돈도 시간도 전부 잃었는데. 그러다 병원이 승소라도 하면요?” (이00, 20대, 성형수술 의료과실 피해 경험자)

의료기관이 묵묵부답이고, 중재원을 통한 조정까지 거부당할 경우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민사소송이다. 하지만 1심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은 비용이 약 1000만 원이 든다. 민사소송은 의료인 과실을 의료사고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낮다. 그뿐만 아니라 패소할 경우 소송에 따른 보상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5.9.4, “의료기관과 조정해결 ‘좁은문’… 비용부담에 소송 대부분 포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병원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니 그대로 끝났어요. 어느 병원에서 참여 한다고 하겠어요? 위원회니 기관이니 결국에는 의사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들도 진단서를 증거로 요구해요. 다른 병원엔 이 병원(환자가 수술했던 병원)하고 분쟁 날 까봐 안 써주죠.” (이00, 20대, 성형수술 의료과실 피해 경험자)

2012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개원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4천985건의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42.2%(2천106건)만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5.9.16,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은 병원 절반 넘어")

“한 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다 전화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형피해 사례 무료 상담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된다고. 성형은 기능의 문제라기보다 미용 상의 이유로 수술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능적인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해서 그냥 전화만 한 번 해보고 말았어요.” (허00, 20대, 코필러 부작용 경험자)

임주현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상 과실이나 손해가 없이 환자 개인의

주관적 불만에 대한 병원의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코메디닷컴뉴스, 2015.9.29, “명절연휴 미용성형... ‘전후 사진’ 꼭 찍으세요”)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성형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부작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성 글은 없고 해당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이 없는 재수술을 받으라는 바이럴마케팅 글이 가득하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3개의 ‘수술명’(코수술, 쌍꺼풀 수술, 가슴 수술) + ‘부작용’ 키워드를 네이버와 다음에서 직접 검색해보았다(2015년 8월 13일 기준). 각 포털 사이트의 상위에 노출된 20건(네이버, 다음 각각 10건)의 블로그 글 중 해당 성형외과의 수술이 부작용이 없음을 알리거나 재수술을 권유하는 내용의 바이럴 마케팅 글은 코 수술 20건, 쌍꺼풀 수술 20건, 가슴 수술 15건이었다.” (이우연, 기획단 <성형산업스파이>)

6. 나가며

- 이룸의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성형대출을 포함하여 과도한 이자를 물도록 하는 대출관련 법개정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형대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모아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책과 더불어 고민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중단되지 않는 한 성형산업이 돈을 버는 구조는 계속 힘을 갖게 될 테니 말이다.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내용의 중요한 축으로 여성의 몸다양성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얘기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 및 의제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갖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여성건강의 영역에서의 생식질환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권장되는 몸과 이미지를 넘어서는 관점과 지식 속에서 몸다양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허용하는 몸 생김새라는 것이 있다.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이것을 체감한다. 그걸 몸 규범이라고 한다면, 몸 규범은 그걸 따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후퇴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스스로 그 몸 규범을 추구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 여성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려면, 국가가 이런 환경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양한 몸, 변화하는 몸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도록⁴⁶⁾"

- 릴레이 수다회 <여자다워지느라 아프다> 중에서

46) 한국여성민우회(2012),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프로젝트] 릴레이수다회2 <여자다워지느라 아프다!>후기 "10대 여성도 3-40대도 20대 초반의 몸을 쫓게 되는 사회잖아요" 중에서

【토론②】

성형대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의 허점을 돌파하기 : 성형대출의 반인권적 속성을 고려한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원민경 (법무법인 원)

1. 들어가며

수년 동안 성산업과 사채시장의 관계, 그 과정에서 외면되는 여성인권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해 온 이룸에서 이번에는 성산업과 대부업, 성형산업의 공모관계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여성특화대출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려고 하는바, 이룸의 이번 포럼이 성산업과 대부업, 성형산업의 공모관계를 해체시키고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제10조⁴⁷⁾를 통해 채권이 무효화된 경험을 한 알선업자들 중에서 여전히 위 법 10조의 채권 무효조항에 산입되는 선불금의 성격을 갖는 금원을 교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보고서의 문제제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합법의 테두리에 숨어 있는 제2, 3 금융권의 대부업자들을 통한 대출상품이 성형수술비, 전세보증금, 카드대금, 핸드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알선자들과 여성 사이에 파고 들어온 경우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10조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7)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상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사문화됨.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을 살펴본 뒤 위 공모관계의 해체를 위해 위 각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가. 대부업법상의 과잉대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1) 이룸 보고서에서 소개된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의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대부업에도 과잉대부의 금지란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법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2009.4.22.]]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6.28 제 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본조신설 2009.4.21] [[시행일 2009.4.22]]

(2) 따라서, 이룸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과 같이 객관적인 변제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 수입과 여성의 남은 삶, 여성의 몸을 담보로 생활을 뿌리째 뽑는 대출은 위 대부업법 제7조의 과잉대부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과잉대부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에게 분명하게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에 위반하여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잉대부행위에 따른 폐해와 인권침해상황, 과잉대부행위로 인한 대부업자들의 부당한 수익창출측면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만을 부과하여서는 과잉대부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과잉대부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과잉대부행위를 한 경우 위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인(채권 무효 선언)**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19조⁴⁸)에 제7조 위반행위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검토

48) 대부업법 제19조에서는 대부업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과잉대부금지조항은 이름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악탈적 대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됨이 마땅할 것이다.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5.7.24] [[시행일 2016.7.25]]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2.12.11, 2015.7.24] [[시행일 2016.7.25]]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가.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접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서 매우 문제입니다. 즉, 채권자가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과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법 제8조의 3 ②항),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에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어(법 제8조의 3 ①항) 채권자가 관계인에게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여성인 채무자에게는 무언의 협박이나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6. 10.말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위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서도 여전히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인바, 1일 2회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됩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으로는 약탈적 대출행위 성격을 갖는 대출이 이미 실행된 이후 채권자의 채무 독촉을 받는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이로 인한 성산업등으로의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개별적 접촉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매매처벌법 중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규정의 확대 필요성

성매매처벌법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하고 존속시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성특화대출이라는 성산업과 공모된 대출채권에 의하여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존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출피해의 책임을 여성이 아니라 채권자 내지 채권자를 알선한 자(업주 내지 성형 브로커)가 부담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룸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이를 위한 법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토론③】

금융과 신용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김주희 (이화여대 강사)

0. 들어가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이번 포럼은 성매매 문제가 한국 사회 여성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과 착종하면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여성들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즉, 성매매 문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결정했는가 혹은 성매매에 강제되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결심한 맥락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포함된다. 또한 그것이 불법 대출이든, 합법 대출이든, 여성으로 하여금 어쨌든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도덕적 결심’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정을 여성 스스로 내렸다고 해서 이들이 성매매를 ‘괜찮은(decent) 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빈곤한 여성들이 선취하고자 한 욕망과 도덕 앞에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말인 즉, 성매매 산업은 ‘업소 배치’나 ‘초이스’ 등의 장치를 통해 여성들의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여성들은 ‘업소 배치’의 과정이나 ‘초이스’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소비, 혹은 대출을 통한 소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이 됨과 동시에 성형 수술 희망자가 되고, 채무자 혹은 대출 희망자가 된다. 나는 성매매 산업에 진입한 여성들이 새로운 “필요”에 의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재여성화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⁴⁹⁾

졸고의 분석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러한 “재여성화 전략”으로서의 소비, 특히 ‘외모관리-소비’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외모관리와 관련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 등급 업소에 속한 여성이라는 표식을 구매하는 실천이며 동시에 업소에서 남성 구매자에 의한 초이스 가능성을 체현하는 상품화 과정 그 자체이다. 또한 여성 스스로에 의해 추진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품화 과정, 즉 자기 투자의 과정은 (이름 발제문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확대된 신용, 다양한 대출 상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자기 투자의 결과, 이익을 자신이 수취하게 되는가? 발제문의 [사례4]를 통해 알 수 있듯 “유흥업소 실장은 2차 없이도 한 달에 5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며, 성형수술을 하면 1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형을 통해 여성들은 월 5백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계산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틀에서 보자면 이들의 채권이 상품화되는 금융 혁신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재여성화 전략”은 금융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고, 여성들은 몸 노동의 유한성, 자기 투자의 불가능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더욱 결박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들의 자발적인 “재여성화 전략”을 앞세운 성매매를 둘러싼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착취 구조에 대해 이름은 법 제도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들의 수입이 두 배로 오를 수 있다는 환상에 의존하여 과잉 대출과 과잉 성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형산업, 대부업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적 정비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성매매 산업이 다양한 산업 영역과 거미줄처럼 얽힌 외연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를 개인의 행위, 선택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담론적 지형에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발제문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여성들은 성매매 산업에서 경험하는 성형 수술이나 대출로 인한 문제 역시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지지를 표하면서 동시에 그 가능성 혹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상상력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1.

발제문에도 지적되고 있듯이 여성타깃 대출상품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우대 대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을 신용을 가진 독립적인 경

49) 김주희(2016), “성매매 여성들의 “재여성화 전략”으로서의 ‘외모관리-소비’ 활동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2호, 57-92쪽.

제인으로 간주하지 않은 역사적 맥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사실 신용은 이 시대 차별적인 자본에 대한 접근도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신분제’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성별화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아내와 딸)의 순결은 남성 “신용”의 징표로 계산될 뿐(Greaber, 2011[2011]: 582)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Rubin, 1975: 175).

남성들이 서구의 산업화 기간 동안 권력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기회를 일방적으로 얻어낸 대표적인 예가 기혼 여성에게는 배제된 신용 거래 발전이다(Walby, 1996[1990]: 273). 불과 1974년 미국에서 ‘대출기회균등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 여성운동의 주요한 아젠다는 “여성들에게도 신용을!”이었다. 다음 세기 여성 미래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성공적인 회의로 평가되곤 하는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에서 발표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에는 각국 정부가 여성 빈민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기업가와 농촌 여성 등에게 신용대출, 저축 등 금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안이 중요한 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신용을 갖는 것, 대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여성 인권의 문제로 분류되어 왔다.

마리케 드 괴데(De Goede, 2000)는 심지어 ‘신용(credit)’이라는 것이 ‘신용 부인(Lady Credit)’이라는 성별화된 문화적 가정 속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현대의 금융 구조에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돈에 대한 지불 약속이 남성화된 행위자인 ‘신사’의 윤리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때 ‘신사’는 비합리적이면서 유혹적인 ‘신용 부인’을 통제, 정복하면서 자신의 남성적 자질로서의 도덕성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가정이다. 이처럼 신용은 태생적으로 성적 메타포를 지닌 여성화된, 남성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쟁취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허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여성전용 대출상품을 여성들의 ‘자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실제 성노동할 권리를 주장하는 논자들의 입장 역시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자신들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스스로의 시도 속에서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대출을 통한, 혹은 성형을 통한 자유의 확보 역시 포함될 것이다.

2.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건강한 경제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활’은 어떻게 상상될 수 있을까? 19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대는 전 세계의 빈민들에게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제공하는 활동, 다시 말해 ‘신용의 민주화’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활동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용의 민주화’는 과거 기업에게만 제공했던 신용을 개인들에게도 ‘민주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신용이 가계와 개인의 평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프로그램은 이 시대 빈곤한 여성 대상 가장 성공한 ‘자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가난한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소액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퇴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다양한 신용 교육과 ‘창업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간주된다. “경제와 임파워먼트의 결합으로서의 자활(김인숙, 2008)” 사업이 제도적으로 확장된 것도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굳이 창업자금 대출의 방식이 아니어도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는 자활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금융과 신용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성매매 문제는 하나의 문제적 사례가 아니다. Fiona Allon(2014) 식으로 말하자면 금융화된 성매매 산업은 “새로운 성별 분업을 만들어내는 금융 계산과 투기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한 신용은 금융화된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보충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성매매 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기반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금융화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성매매에서 비롯된 문제를 들추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또한 동시대 여성들을 매춘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젠더화된 자본의 축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성들의 쾌락을 자연화하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성매매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증언에 동참하는 여성주의자로서의 기본적 책무일 것이다. 동시에 성매매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 한정된 구제 활동과 임파워 활동을 넘어 성매매 문제를 이 시대 ‘여성 문제’로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화, 부채 경제, 신용의 민주화라는 최근의 변화가 여성들의 몸을 본원적 토대로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화하는 후속 연구와 실천 역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부록1】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강남 거리 캠페인 유인물>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강남 거리 캠페인

지들만 배불리는 냄새가 난다!

- 유흥업소, 성형외과, 대부업체 -

제주에 여자, 바람, 돌이 많아 제주도가 삼다도라면
강남에는 이것들이 많습니다.
하나, 성형외과 돌, 유흥업소, 셋, 대부업체입니다.
이들은 여성을 착취하여 덩치를 키워갑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한 **추심**을
멈추어라!
약탈적 **여성대출** 반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유흥/성형/대부업 반대!

대부업체는 언제나 ‘돈이 필요한’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예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성형외과는 언제나 수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만 받으면, 왜 이 수술이 필요한 것인
지,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대부업체와 성형외과는 몸과 얼굴이 바뀌면 더 큰 돈을 벌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입
을 모아 말합니다. 대부업체는 성형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홍보하고 병원에서는 하는 김
에 큰 돈을 들여 싹 고치라고 제안합니다. 의료기관과 대부업자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오갔
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대부업자들은 자기들이 ‘아는’성형외과를 소개시켜주고,
성형외과는 대부업자를 통해 손님을 받는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쿵쿵, 어디서 냄새 안 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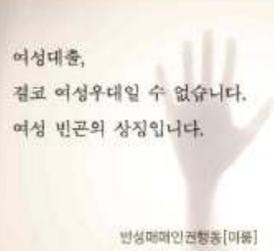
또한 ‘유흥업소 여성우대’가 찍혀있는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홍보전단지
는 유흥업소가 어떤
식으로 대부업체와 공모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유흥업소는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머무르도록 다양
한 **획책**을 사용합니다. 유흥업소는 더 많은 남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 홍보합니다. 다이어트 주사와 약으로 시작된 이 흐름에 성형시
술이 중요하게 등장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손쉽게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수
있으며 대부업자를 연결합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여성들은 업소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여성을 둘러싼 이들의 공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e-loom.org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강남 거리 캠페인



여성대출,
결코 여성우대일 수 없습니다.
여성 빈곤의 상징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악탈적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수입과 담보를 노리는 대출 관행,
빌려줄 때는 친절하게, 회수할 때는 혹독하게 다름으로써
채무자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간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우리는 이 말을 절대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왜 갚지 못할 돈을 빌렸는지를 비난한다.

그런데, 애초에 왜 빌려준 걸까?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는 채무자의 소득, 신용등급, 재산상황 등을 모두 샅샅이 조사했다. 못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건 일종의 투자행위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는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할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만을 비난할까.

돌려받을 만큼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 이상 빌려주었다면 돌려받지 못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갚을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 과도한 채권 추심, 높은 수수료,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악탈에 다름없다.

우리는 모두 갑자기 실직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 가족이 아플 수도, 혹은 내가 아파서 월급은 없이 몇 달간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 급하게 빌린 고마운 단돈 300만원이 천만원을 넘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정부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내몰고 있다. 은행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빌려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악탈적 대출을 서슴지 않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빚을 지고 연체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을 거둬야 한다. 그리고 못 갚을 만큼 빌려준 자에게 왜 갚지 못할 만큼의 돈을 빌려줬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때이다.

참고 <악탈적 금융사회, 제윤경·이현옥, 부·키 출판사, 2012>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e-loom.org



여성대출

- ☹️ 믿음과 신뢰? **그런 건 없다!**
- ☹️ 낮은 이자? **연 27.9%가 낮냐?**
- ☹️ 쉽고 빠른 대출? **어렵고 힘든 빚갚기**
- ☹️ 신용불량자 가능? **어떻게 가능?**
- ☹️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오는 괴롭힘**

빌려주기 전과 빌려준 뒤 얼굴이 싸~ 변하는 그 이름
대 부 업 자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무자비하고 가혹한 추심을 멈추어라!
 악랄적 여성 대출 반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유흥/성형/대출업 반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 대출받지 않아도 **주거안정! 의료보장! 생활안정!**
- Ⓛ 여성의 빈곤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 Ⓛ 여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성산업 철폐!**

여성대출은 여성우대가 아닙니다. 여성빈곤의 상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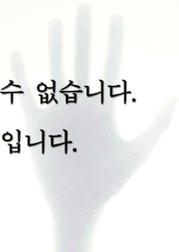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무자비하고 가혹한 **추심**을
멈추어라!

악랄적 **여성대출** 반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유흥/성형/대부업 반대!



여성대출,
결코 여성우대일 수 없습니다.
여성 빈곤의 상징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름]

【부록2】 <판결문 : 강남의 죄>

판 결 문

- 강남의 죄 -

피고인 강남 소재 대부업체, 성형외과, 유흥업소
사 건 2016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여성특화대출 문제제기 사업
[대출은, 추심!]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범죄단체조직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강간과 추행의 죄, 횡령죄, 배임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

주 문

여성 몸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중단하라
무자비하고 가혹한 추심을 멈추어라
대출받지 않아도 주거안정/의료보장/생활안정
여성의 빈곤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여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성산업 철폐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를 끊어내라

이 유

우리는 이 판결문에서 지상과 지하,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대부업-성형산업-성산업의 공모를 '강남'으로 칭한다. 강남이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자금흐름의 원천으로서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여성에 대한 낙인과 처벌로 그들의 부패와 비리, 범죄를 은닉한 사실을 유죄로 판결한다.

강남은 2016년 한국사회의 부정의와 혐오를 공고하게 하며 그 시선을 오로지 '강남패치'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의 '여성'들에게 쏠리게 했다. 이는 국가 존립의 당위 자체를 의심케 하는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난 이후에도 박근혜와 최순실을 '성형' '섹스' 등 '여성의 사생활'을 영위한 존재로 만들고 이에 대한 루머로 공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대체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강남이라는 지리적, 상징적 공간에 쏠려 비틀려 있는 권력과 인식은 성불평등한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조치를 방임할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다. 그렇기에 지금껏 '여성'을 향했던 죄와 오욕의 흑막, 역사상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받지도 처벌받지도 않은 강남의 '실세'들에게 그 죄와 책임을 묻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강남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현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들 중 하나는 강남이 무직의, 무담보의 여성들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던 순간에 놓여있다.

①강남이라는 공간에 밀집된 대부업-성형산업-성산업의 공모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및 강남 소재 대부업체, 성형외과, 유흥업소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도박, 마약, 성산업, 대부업 최소 연간 140조원 규모(환수 2천억원~3천억원, 0.1%~0.2% 수준)
- 조직범죄단체 유흥업 직접운영 74.9% 영업보호 45% 대표사업 27.7% 일반인과 공동투자 20.8%
- 조직범죄단체 사채업과 채권추심업 관여 54.1% 대표사업 9.3%
- 전국 제2금융권 업체 10,210개 중 서울 3967개, 강남서초 1200개
- 국제 성형시장 규모 약 21조원 중 국내 규모 5조원(25%)
- 전국 미용성형외과 약 4000여개 중 강남구 366개
- 전국 유흥주점 42,284개 중 서울 4,967개, 강남 600여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보고서는 조직범죄단체의 합법화와 기업화 흐름을 우려하며, 성산업과 대부업을 전통적 소득원으로 분석한다. 성산업과 대부업은 공생관계이며 개인 신용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교환한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처음 진행할 때부터 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하는 등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전망이 바로 유흥업소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직 출신의 연구참여자들은 유흥업소에 예쁜 아가씨가 있고 성매매와의 연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손님이 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심층면접에서 서술한다. 여성가족부

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일반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추정비율이 42%에 다다른 이유이다. 인간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하고 몸으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가부장제를 적나라하게 재현하고 있는 유흥업은 '초이스' 경쟁을 통해 '사이즈'를 올려야하는 종사자의 필요를 만들어내고, 이는 그대로 성형 수요로 이어진다.

②강남은 왜 무담보, 무직의 여성에게 성형대출상품을 빌려주었는가?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강남은 '2000만원 상당의 성형대출 상품으로 사이즈를 올리면 유흥업소 일을 해서 두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성형대출상품'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법정최고이자율을 준수하고 중개수수료만 현금박치기로 해결한다면 이 과정은 어느 법정에서도 기소할 수 없는 완전한 합법이다. 성형대출상품은 불법 그리고 미래의 영역에 있던 구매와 접대의 이윤을 차용증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받아 마땅할 현금으로 세탁해준다. 또한 추심과 성형 그리고 성매매의 연결고리 속에 여성을 위치시킴으로서 여성을 '자발적으로' 성산업으로 인입시키고 더 이상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밑바탕을 깔아준다. 이렇게하여 약탈적 고리대금업, 건강보다 이윤을 앞세운 의료상업화, 인간을 거래 가능한 몸으로 개조하는 성산업이 결합하여 초래하는 '여성 성형 대출 상품'의 복합적인 피해는 여성의 선택과 책임이자 여성의 빛으로 남았으며, 애초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강남의 의도는 은폐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형과 빚과 유흥업소 종사에 대하여 여성에게 죄를 묻는 법과 언어를 걷어내고 은폐된 강남의 구조와 의도, 책임을 분석하고 드러내는 법과 언어를 발굴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법들에는 대부업, 성형산업, 성산업의 행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송송 뚫려있고 운 좋게 기소가 되더라도 숨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일을 감수할 정도의 위협이 된다. 이러한 권력의 비대칭이 여성주의적 관점과 해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강남이라는 시공간에 압축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여성들에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시술을 받게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사회, 일상화된 빈곤과 빈곤의 여성화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여자라면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기를 치는 사회, 여성노동의 저임금과 짝을 이루는 고액의 화대를 형성한 사회를 고발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절박함을 방기한 죄,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인 죄, 여성들의 몸을 소모한 죄,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여성의 욕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강남의 죄이다.

여성은 정상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뿐 결코 빈곤할 수 없다는 상상력, 여성에게는 낭비와 사치와 문란함이 있을 뿐 생존과 독립은 없다는 발상을 퍼트리는데 이 강남의 죄이다.

강남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부와 권력, 그것이 강남의 죄이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름]은
성판매(경험)자의 피해를 지원하며 인권을 확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단체 입니다.

■ 성판매(경험)자 지원활동

24시간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내/방문 상담을 통한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쉼터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성매매 구조와 산업에서 발생한 채무, 폭력 등의 권리 침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 성매매현장 방문활동

성매매 현장에서 홍보와 정보제공 상담활동을 합니다. 성판매(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유
휴업 종사자를 위한 <별별신문>을 발간하고 배포합니다.

■ 대중인식사업 및 연구사업

캠페인, 포럼, 강의, 출판 등을 통해 성매매 현실을 알리고 성적 억압과 낙인의 문화를 바꾸
는 실천을 만들어 나갑니다.

■ 이름의 발간물

<이상한 성매매나라의 경제이야기-‘자유로운’파산불가능한’여성들>(2015)

별별사람 - 우리가 만났던 별별여자들 이야기(2014)

성적소수자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2014)

이름기획포럼 새로고침F5 2차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 해체는 불가능한가>(2012)

이름기획포럼 새로고침F5 1차 <성매매여성 안전을 말 할 수 있는가>(2012)

성매매를 말하는 서른개의 목소리 - 루머 종결자들(2012)

청량리 집결지 기록화 작업 - 불온한 확산,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2010)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2009)

성매매 백과사전, 인터넷에 끼어들기(2008)

성매매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보고서(2007)

언니들을 위한 핸드북 법률편 - 희망 충전 100%를 위한 2%의 용기

언니들을 위한 핸드북 생활정보편 - 희망 충전 100%를 위한 2%의 지혜

유휴업소 종사자를 위한 ‘별별신문’발행

2016 이룸기획포럼

성형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 발 행 처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 발 행 일 : 2016년 12월

|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37길 30, 5층(용두동)

| 전 화 : 사무 02-953-6280 상담 02-953-6279

| 팩 스 : 02-953-6281

| 이 메 일 : eloom2003@naver.com

| 홈페이지 : www.e-loom.org

| 페이스북 : facebook.com/eloom2003